

대학원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16조에 의거 각 대학원의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신청자격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학과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은 두 학기를 이수하고 18학점 이상, 통합과정은 다섯 학기를 이수하고 45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매 학기 학업성적 평균 93점 이상인 사람
2.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및 특수대학원은 세 학기를 이수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매 학기 학업성적 평균 93점 이상인 사람
3.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의 연구 실적이 공인된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되거나 확정되는 등 연구실적의 탁월성이 인정되는 사람
4. 제3호의 연구실적 탁월성에 대한 판단은 해당 학과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3조(신청절차 및 선정) ①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서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재학 둘째(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및 특수대학원은 셋째, 통합과정은 다섯째) 학기말에 조기졸업 이수신청서(소정양식)를 지도교수 및 학과책임교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기졸업 대상자를 결정한다.

제4조(수강신청) 조기졸업 신청자는 「대학원 학칙」 제21조제4항에 의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매 학기 6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.

제5조(등록) 각 학위과정의 조기졸업 대상자는 매 학기 초 소정의 수업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,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및 특수대학원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.

제6조(종합시험 응시자격) 조기졸업 대상자는 「대학원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관한 규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, 통합과정은 6학기, 국제전문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 및 특수대학원은 4학기 초에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
제7조(학위청구 및 학위취득 자격) 제5조의 정규등록을 필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(경영대학원, 사회복지대학원, 법무대학원은 종합시험에 합격)한 조기졸업 대상자는 각각 석사학위 청구논문 또는 논문 대체실적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무논문석사학위과정은 연구보고서)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① 조기졸업 신청자는 마지막 학기에 교과 학점을 이수하면서 학위청구를 할 수 있다.

② 학위청구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은 「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

제8조(자격상실) 조기졸업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을 상실한다.

1. 매학기 학업성적 평균이 93점 미만인 자
2. 학칙 제57조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
3.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학원 학칙」 과 대학원 제반 규정 및 대학원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조기졸업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.
- ③ (적용례) 200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조기졸업에 관한 내규를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)의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